

제 12 장 금융서비스

제 12.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9장(투자) 및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범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 가. 제9.9조(보건, 안전 및 환경 조치), 제9.10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제9.12조(수용), 제9.13조(송금), 제9.14조(혜택의 부인) 및 제10.11조(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나. 제9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9.10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제9.12조(수용), 제9.13조(송금) 또는 제9.14조(혜택의 부인)를 당사국이 위반했다는 청구에 대해서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다. 제9.13조(송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2.5조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¹⁾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

동 또는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어떠한 활동 또는 서비스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2 조 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2.5조제1항의 내국민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

1) 부속서 12가는 제3항가호에 기술된 특정 활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기재한다.

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2.3 조 최혜국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및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2.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산출량²⁾,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

2) 가호3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2.5 조

국경 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2나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해서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하지 않는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6 조

신금융서비스³⁾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해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⁴⁾ 제12.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12.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 나.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제 12.8 조 고위경영진과 이사회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을 그 당사국의 국민, 그 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2.9 조 비합치 조치

1.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와 제12.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II의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바와 같은 중앙정부, 또는
- 2)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⁵⁾이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또는 제12.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그 개정⁵⁾

2.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와 제12.8조는 부속서 III에 기재된 자국 유보목록 제2절에 당사국이 기재한 바와 같은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해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9.3조(내국민대우), 제9.4조(최혜국대우), 제10.2조(내국민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에 기재된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에 기재된 비합치 조치는,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2.2조나 제12.3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5)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12.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⁵⁾이 제12.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범위에서만 그 개정⁵⁾에 적용된다.

제 12.10 조 예외

1. 이 장의 그 밖의 규정 또는 제9장(투자), 특히 제13.2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3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 및 제11장(기업인의 일시입국),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⁶⁾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장 또는 제9장(투자), 특히 제13.2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3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 및 제11장(기업인의 일시입국),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9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9.7조(이행요건)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9.13조(송금)나 제10.12조(지불 및 송금)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9.13조(송금) 및 제10.12조(지불 및 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혜택을 위해, 송

6)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않는다.

4.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에 있는 국가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12.11 조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21.1조(공표)를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려고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당사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⁸⁾

4.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구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숙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9.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해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신청은 모

7)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가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주소이든지 그 밖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다.

8)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에 대한 응답을 통합할 수 있고 최종 규정 공포 문서와는 별도의 문서로 그 응답을 공표할 수 있다.

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 12.12 조 **자율규제기구⁹⁾**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2.2조 및 제12.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12.13 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9)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기구는 그 기구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요구되는 범위에서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 12.14 조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간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기술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 또는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 12.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2다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2.16 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부속서 12라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해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 제12.19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4. 위원회는 각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2.17 조

협 의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는 부속서 12라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따른 협의에 참여하는 금융규제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특정 규제, 감독, 행정 또는 집행 사안에 개입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금융규제당국 간 정보공유에 대한 관련법으로부터 또는 양 당사국의 금융규제기관 간 협정 또는 약정의 요건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2.18 조 분쟁해결

1. 제23장(분쟁해결)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해 이 조에 의해 수정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3.6조(패널 요청)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3.7조(패널위원의 자격)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12.10조를 원용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 또는 관행에 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해 제정될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4. 제23.17조(불이행 및 보상)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대상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조치의 자국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혜택을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정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 12.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청구를 제9장(투자)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제9장(투자)에 따라 중재에 청구가 제기된 다음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항변으로 제12.10조에 따른 예외를 원용하는 경우, 피청구국이 그러한 항변을 제출하면 중재판정부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해 위원회에 그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한다. 중재판정부는 위원회에 의한 그러한 사안의 결정 또는 이 조에 따른 패널에 의한 그러한 사안의 보고를 접수할 때까지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서, 위원회는 제12.10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해 유효한 항변이 되는지 및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 항변이 되는지의 문제를 결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문제에 관해 위원회에 구두 및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정문 1부를 중재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신속하게 송부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제

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 이후 10일 이내에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23.6조(패널 요청)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2.18조에 따라 구성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문제에 관해 패널에 구두 및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13조(패널 보고서)에 더하여, 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위원회와 중재판정부에 신속하게 송부한다. 보고서는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4. 제3항에 따른 패널 설치에 대한 요청이 제3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를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가 제4항에 따라 문제 결정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 또는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제 12.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

그러나 이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점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 1) 생명보험
-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9.18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해 규제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가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9.18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9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1.4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비당사국 기업의 지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

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제15장(경쟁정책)의 목적상, 지정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해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15장(경쟁 정책)의 목적상, 지정독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2가

제12.1조제3항가호에 관한 양해

1. 양 당사국은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12.1조3항가호에 기술된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 장이 그러한 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은 다음의 경우 그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한다.

- 가. 당사국이 그러한 활동 및 서비스를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유보하고, 그러한 활동 및 서비스가 그 밖의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공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 나. 그러한 조치가 분담금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분담금에 관해 그러한 활동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그렇게 유보된 경우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제12.1조제3항가호에 언급된 활동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 가.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일부 또는 모든 활동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독점을 지정할 수 있다.
- 나. 참여자가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정독점 외의 기관의 운용 하에 관련 분담금의 모두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다.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일부 또는 모든 참여자가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정독점 외의 기관에 의해 공급된 일정 활동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 라. 그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의해 일부 또는 모든 활동 또는 서비스가 공급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 또는 서비스는 일부 또는 모든 분담금의 운용 또는 연금의 지급 또는

일정 분담금을 이용하는 그 밖의 지급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분담금**이란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계획 또는 제도에 대해 또는 달리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계획 또는 제도를 조건으로 개인에 의해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지불된 액수를 말한다.

부속서 12나 국경 간 무역

대한민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2.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해 제12.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¹⁰⁾, 위험평가¹¹⁾,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2.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2. 제12.5조제1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해 제12.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0)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1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3. 제12.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가.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¹²⁾

나.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2.20조¹³⁾의 금융서비스의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¹⁴⁾,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2.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¹⁵⁾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평가의 공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대한민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폐루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4. 제12.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해 제12.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1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3항가호에 언급된 “금융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부속서 12나 제3항에 언급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자료 처리가 개인 자료와 관련된 경우, 그러한 개인 자료의 취급은 그러한 자료 보호를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한다.

14)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15) 2007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화로만 표시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집합투자기구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정의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 그리고

라. 제12.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인과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5. 제12.5조제1항은 제4항에 기재된 서비스에 관해 제12.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6. 제12.5조제1항은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제12.20조¹⁶⁾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제12.20조¹⁷⁾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¹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6) 부속서 12나 제6항에 언급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자료 처리가 개인 자료와 관련된 경우, 그러한 개인 자료의 취급은 그러한 자료 보호를 규제하는 페루의 법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한다.

17) 전자적이든 물리적이든, 무역 플랫폼은 이 항에 명시된 서비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18)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는 제12.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그러한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부속서 12다 구체적 약속

제 1 절 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¹⁹⁾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리를 위해 자국 영역 내외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에 이 약속을 발효한다.

제 2 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기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각자의 금융규제기관의 노력을 지원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기관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기관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간 협의 또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해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3 절 포트폴리오 운용

19) 요구에 따라, 제12.20조 금융서비스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은 관련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1. 대한민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신탁 서비스

나. 보관 서비스, 그리고

다.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실행 서비스

이 항은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일단,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은 제12.1조 및 제12.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투자 신탁, 그리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페루

4. 페루는 자국 영역 내에서 또는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²⁰⁾

가. 투자 자문, 그리고

²⁰⁾ 이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 서비스
- 2) 신탁으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 신탁 보유를 배제하지 않는 신탁 서비스, 그리고
- 3) 실행 서비스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않는 한, 실행 서비스

5. 제4항은 제12.1조 및 제12.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을 말한다.

가. *최고 법령 제093-2002-EF*호에 의해 승인된 증권시장법 통합문서에 따른 투자 및 유가증권을 위한 뮤추얼 펀드

나. *법령 제862*호에 따른 투자 펀드, 그리고

다. *최고 법령 제054-97-EF*호에 의해 승인된 통합문서에 따른 연금 펀드

제 4 절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서비스

페루

민영화되거나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퇴직연금제도 또는 사회보장제도²¹⁾의 유지, 수정 또는 도입의 맥락에서,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언급하고 부속서 II 또는 III에 기재된 페루의 유보목록에 있는 모든 비합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가. 제12.2조제1항 및 제12.2조제2항은 부속서 12가를 포함하여 제12.1조제3항가호를 조건으로 제12.1조제3항가호에 기재된, 페루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급을 유보하지 않은 활동 및

2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12가를 포함하는 제1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장의 범위 내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서비스에 대한 금융기관의 공급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페루는 그러한 활동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해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기관의 수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

부속서 12라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1.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금융규제기관과의 조정하에 *경제재정부*, 또는 그 승계기관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제의 구체화

2.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위원회 회의의 개최 이전에 제1항에 규정된 당국은 당사국이 제기하기로 선택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금융서비스 문제의 목록을 상대방국에게 제공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및 서비스 조치와 관련한 양해

양 당사국은 이 협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고 이 양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가. 양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해, 그리고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인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나. 제9.6조(고위경영진과 이사회)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 어느 한 당사국은 지점에 할당된 자본 및 책임준비금이 자국 영역으로 효과적으로 들어오고 현지 통화로 전환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 요건을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 보험회사의 지점에 대해 자국의 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라. 제12.6조(신금융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법령, 결의 또는 규정이 자국 법에 구체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당사국은 집행기관, 규제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의해 그러한 법령, 결의 또는 규정을 발할 수 있다.

마.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규제기관의 권한 및 기술 설비의 위치 요건과 같은 분야를 다루면서도 국경 간 금융정보 이전을 허용할 접근 방법의 채택을 도출할 규제제도의 개정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페루가 부록 III-가에 포함된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보유하거나 채택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그러한 조치는

- 1) 제12.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어떠한 수정, 개정 또는 변경도 원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2.4조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 2) 제12.10조(예외)제1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12.2조(내국민대우)는 페루가 그러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법의 어떠한 수정, 개정 또는 변경 또한 제12.10조(예외)제1항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12장(금융서비스)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